#### <설명서>

#### 서울도시철도공채증권19-06

투자 위험등급: 6등급

123456매우<br/>높은<br/>위험다소<br/>높은<br/>위험보통<br/>위험낮은<br/>위험

신한투자증권은 동 채권의 발행사 신용등급, 보증여부, 환율 및 유동성위험, 상각 및 전환 조건(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)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6등급 (매우낮은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녹취	숙려		고령투자자	판매제한		
	일반투자자	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	투자권유 유의상품	고령투자자	부적합투자자	일반투자자
N	N	N	N	N	N	N

※ 고령투자자: 65세 이상/ 부적합투자자: 고객투자성향등급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

※[주의]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#### □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구 분	주요 내용					
국내채권거래	- 투자자가 국내의 장내채권시장 또는 장외채권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					
해외채권거래	- 투자자가 국내외 장외시장에서 해외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 수를 약정하는 거래					

## □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

금리변동위험	채권 <b>중도 매도 시</b> , <u>금리 변동에 따라</u> 매도시의 매매금리가 매수시점의 매매금리보다 높은 경우 <u>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</u> .						
신용 위험	채권은 발행사 또는 발행국가의 <u>신용위험(부도 또는 파산 등)에 따라 원금</u> <u>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						
	중도해지 중도해지시 중도해지						
	불가	허용					
유동성 위험	O		0				

본 채권은 발행사에 중도환매를 요청할 수 없으나 시장에서의 매도를 통한 중도 환매(매도)가 가능합니다. 단 매매시 시장상황에 따라 <u>원금의 일부 또</u> 는 상당부분이 손실될 수 있는 등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 □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 (계속)

유의사항

본 상품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원금비보장상품</u>으로 당사는 본 채권에 대해 <u>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</u>.

## □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

구분	고객 투자성향	유의사항			
1등급 (매우높은 위험)	공격 투자형	-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,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.			
2등급 (높은위험)	적극	- 시장 평균수익률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,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수용			
3등급 (다소 <del>높은</del> 위험)	투자형	-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.			
4등급 (보통위험)	위험 중립형	-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. - 예/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 자에게 적합한 상품			
5등급 (낮은위험)	안정 추구형	-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.			
6등급 (매우낮은 위험)	안정형	-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. -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			

#### □ 민원 및 상담연락처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(1588-0365)로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shinhansec.com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고객님께서는 상품내용 및 이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해당 상품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MTS 및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자보호부(02-3772-3000) 또는 금융감독원(국번 없이 1332),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www.fss.or.kr)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담당부서: 신한투자증권 채권상품부(대표번호: 1588-0365)

## ● 위험등급 분류표

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		1등급 (매우높은위험)	2등급 (높은위험)	3등급 (다소높은위험)	4등급 (보통위험)	5등급 (낮은위험)	6등급 (매우낮은위험)
고객 투자성향		공격투자형	적극투자형		위험중립형	안정추구형	안정형
일	<b>국내</b> (채권 신용등급)	B+ 이하 또는 무등급	BB+ 이하	BBB+ 이하	A+ 이하	AA- 이상	국공채 등 <sup>주1)</sup>
년 반 채 권	<b>해외</b> (국제 신용등급)	B+ 이하 또는 이머징통화 채 권 <sup>주2)</sup>	BB+ 이하	BBB+ 이하	A- 이상	A- 이상 국채	
-		해외채권 위험등급은 미국 달러 및 달러 인덱스 구성통화 <sup>주3)</sup> 기준(환율변동성 반영)이며 그외 통화는 추가 1등급 상향을 원칙으로 하되 유동성 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					
조 건 부 자 본 증	<b>신종</b> (발행사 신용등급)	AA+(발행사) 이하	AAA(발행사)	정부손실 보전기관 <sup>주4)</sup>			
	<b>후순위</b> (발행사 신용등급)		AA+(발행사) 이하	AAA(발행사)	정부손실 보전기관 <sup>주4)</sup>		
<b>권</b> (상각, 전환)		조건부 자본증권은 일반채권의 원칙을 준용하되 자본성 및 유동성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외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원금 상각, 전환이 있는 경우(ex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) 기준이며, 원금 상각, 전환이 없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위 기준에서 위험등급 1등급 하향					
CP, 전자단기사채		B(0) 이하 또는 무등급	B+ 이하	A3+ 이하	A2+ 이하	A1	A1 [정부(국가) 보증]

※ 해외통화표시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상향(환율위험 기준): 미국 달러 및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(위험등급 1등급 상향), 그외 통화(위험등급 2등급 상향)

- 주1) 국공채 등 :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 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 권
- 주2) 이머징통화 채권: 브라질 헤알(BRL), 멕시코 페소(MXN), 러시아 루블(RUB), 튀르키예 리라(TRY) 표시 채권 등 포함
- 주3) 달러인덱스 구성통화: 유로(유럽), 엔(일본), 파운드(영국), 캐나다 달러, 크로나(스웨덴), 프랑(스위스). 23.10.31 기준
- 주4) 정부손실보전기관 : 정부손실보전은행(기업은행,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 등) 및 법령상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한함

# 서울도시철도공채증권19-06 개요

본 자료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가격 정보는 본 자료의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거래 시점의 체결 정보 및 거래 조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## ● 채권 종목 정보

종목코드	KR2001024968					
발 행 사	서울특별시					
발 행 일	2019.06.30					
만 기 일	2026.06.30					
표면금리	1.250%					
표시 통화	KRW					
이자지급유형	복5단2					
과 세 체 계	국내 원천징수 기준					
발행금액	56,248,730,000원					
거 래 단 위	액면 수량 1 (천원) 단위					

#### ● 원화채권 매수 프로세스(예시)

- 1. 고객 신청 (신청당일: T): 채권매수금리 확정
- 매수 희망고객 신청 (매수 가능 여부 채권상품부 확인), 모집일 원화기준 총 매수금액(채권매수금액+수수료)
- 중개매수신청 (매수금리 확정)

### 2. 채권결제 확인 후 고객계좌 당일입고 (T)

- ※ 이표 지급일 포함 (T-2일) 장외거래 불가 기간 및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매 일정 지연 가능
- ※ 매수 이후 취소 및 중도환매의 경우 가능 여부 별도 확인 필요
- ※ 상기 프로세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프로세스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

#### ● 기타 유의 사항

- 상기 채권의 직접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채권에 대해 **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**. 중도매매시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이 손실될 수 있으며 **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**.
- 본 상품은 **중도 매도 시** 금리의 변동에 따라 **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**.
- 국내 법률,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세제 개편(안)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 시 **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 외 금융투자소 득(신설)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**.
- 본 채권의 투자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고객의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야함
- 본 채권의 매매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## ※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 투자의 손익구조 (만기 30년 지표물 시장금리 기준으로 매수 하였을 때 기준)

시장금리		채권가격		
	변동폭		변동폭	변동률
2.613%	-0.3%p	11,333.4	-638.94	5.97%
2.713%	-0.2%p	11,115.1	-420.57	3.93%
2.813%	-0.1%p	10,902.1	-207.63	1.94%
2.913%	-	10,694.5	ı	-
3.013%	+0.1%p	10,492.0	202.48	-1.89%
3.113%	+0.2%p	10,294.5	399.95	-3.74%
3.213%	+0.3%p	10,102.0	592.54	-5.54%



**※ 전영업일 종가에 해당하는 금리 및 가격** 

# ※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 안내

- 1.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2.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3.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4.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 [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의 권리 ]

#### 1 위법계약의 해지

- 금융소비자는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'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<u>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</u>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<u>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"1년" 이내의 기간에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"5년" 이내)</u> 서 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대상상품: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
  - 진행절차 :
    -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
    - ② 회사는 <u>"10일"</u>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고(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른 예외 가능)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
  - 주의사항: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
## 2 자료의 열람 요구

- <u>금융소비자는</u>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'에 따라 <u>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등 권리구제를 위한</u> 목적으로 **자료의 열람**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진행절차 :
    - ① 열람의 목적, 범위, 방법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
    -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<u>"6영업일"</u>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
    - ③ 회사는 '6영업일' 이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
  - 유의사항:

단,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

#### 3 청약의 철회

● 본 상품은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'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